

# 김춘환

# 민사소송법

## 실전모의고사+핵심체크 강의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1인자 , 2차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기준

김춘환 교수의 법원행시 강의를 드디어 시작됩니다.

민소법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직 민소법에서의 그 명성으로, 법원행시 민소법 문제에 도전합니다.

10여 년간의 사법시험 Know-how로 반드시 답안지에 써야 하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열정만 갖고 오십시오. “이름값”이 아닌 “실력”을 키워 드립니다.

■ 강의일정 2017년 9/25(월) ~ 9/30(토), 오후, 월~토 강의, 총 6회

시험 : 1:00 ~ 2:00

강의 : 2:15 ~ 5:30

■ 교 재 모의고사 문제·해설(제공)

+ THEME 민사소송법 핵심 (주관식) 암기장(저자, 제5판)

+ 법전(개인지참)

+ 중요단문자료(제공)

## ■ 강의특징

### 1. 사례형 문제

법원행시 민소법 제1문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사례형은 민사소송법의 중요 주제와 최신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감안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특히 사례형은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중요 하므로, 사례형의 형태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 할 것입니다.

### 2. 단문형 문제

법원행시 제2문, 제3문은 소위 '논하라'는 단문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모의고사 출제 시에 예상이 되는 주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에 따로 중요 단문 자료를 제공하여 단문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3. 답안지 직접 채점 및 첨삭

답안은 강사가 직접 채점하여, 어떤 부분이 답안에서 '현출'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적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지를 직접 첨삭할 것입니다.

#### □ 민사소송법에 대한 수강생 Q & A

##### 1. 법원행시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행시는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가 출제를 하는 관계로 민소법의 중요 주제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다루어지는 민소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되고 있는 민소법의 중요 쟁점과 최신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 2. 그러면 강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50점 배점으로 사례형, 단문형을 병행하여, 매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과 그 날 진도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확실히 정리하는 강평을 할 것입니다.

##### 3. 꼭 김춘환 강사를 선택해서 들을 필요가 있나요?

현재 법원직 공무원 민사소송법 시험의 1등 강사로서, 누구보다 법원직 시험 경향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법원행시는 주관식으로 출제 유형은 다르지만, 중요 주제·판례 등은 대동소이 하므로, 누구보다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소법, [cafe.daum.net/chunzivilprozess](http://cafe.daum.net/chunzivilprozess)

#### □ 주의 사항

개강 일에 시험용 **법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시험범위(진도표)

횟수	날짜	강평	주요테마
■ 제 1 회	9/25 (월)	1h 시험 <u>&lt;강평1&gt;</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li> <li>2.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li> <li>3.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li> <li>4.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li> <li>5.관할 - 법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 司 34, 50)</li> <li>6.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li> <li>7.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법인격 부인]</li> <li>8.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li> <li>9.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 53, 54)]</li> <li>10.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li> <li>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li> <li>* 과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과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勞 4회)</li> <li>1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li> <li>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li> </ol>
■ 제 2 회	9/26 (화)	1h 시험 <u>&lt;강평2&gt;</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li> <li>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li> <li>16.확인소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li> <li>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li> <li>*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li> <li>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li> <li>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li> <li>20.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li> <li>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li> <li>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辨 44)</li> <li>23.채무부존재확인소와 처분권주의(辨 44)</li> <li>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li> <li>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li> <li>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li> <li>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li> <li>* 적시제출주의, 이익권, 준비서면</li> </ol>

<p>■ 제 3 회</p>	<p>9/27 (수)</p>	<p>1h 시험 <u>&lt;강평3&gt;</u></p>	<p>28.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法 13)  33.무변론판결(司 45)  * 추후보완제도, 송달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  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辨 47)  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  38.문서제출명령(司 47, 勞 4회)  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辨 46)  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  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  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명(辨 39)</p>
<p>■ 제 4 회</p>	<p>9/28 (목)</p>	<p>1h 시험 <u>&lt;강평4&gt;</u></p>	<p>44.소송종료선언(司 43)  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  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  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 勞 4회)  48.화해권고결정  *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  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司 43, 49)  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  52.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  53.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  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  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체책(司 40)  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체책과 실체법상 구체책(司 40)</p>
<p>■ 제 5 회</p>	<p>9/29 (금)</p>	<p>1h 시험 <u>&lt;강평5&gt;</u></p>	<p>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  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  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  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중간확인의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불요한 경우(司 46)</p>

		<p>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p> <p>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증거공통,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勞 1)</p> <p>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p> <p>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 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p> <p>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p> <p>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勞 4회)</p> <p>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p> <p>75.선정당사자-선정후의 선정자의 지위</p>
<p>■ 제 6 회</p>	<p>9/30 (토)</p>	<p>1h 시험 <b>&lt;강평6&gt;</b></p> <p>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 (辨 45)</p> <p>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p> <p>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 *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p> <p>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p> <p>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p> <p>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p> <p>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p> <p>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 *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p> <p>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p> <p>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p> <p>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p> <p>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p> <p>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p> <p>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p> <p>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p> <p>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 재도의 고안 *특별항고(法 11)</p> <p>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p> <p>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 소송법상 중요문제, 종합정리</p> <p>94. 채권자취소소송(法 16)</p> <p>95.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司 44)</p> <p>96.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司 39, 41, 43, 48)</p> <p>97.상계의 항변의 소송법상 문제점(辨 45, 辨 46)</p>